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02. 28(월)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5. 3. 22(화)
- 다. 상정일자 : 2005. 3. 23(수)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3.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2005년도 조직 및 인력운영 정비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 일부 "과"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과" 명칭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과"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9조)
 - 환경복지과 ⇒ 환경보호과
 - 농업경영과 ⇒ 농정과
 - 임업경영과 ⇒ 산림과
 - 축산경영과 ⇒ 축산과
-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함 (안 제3조)
- 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보호과에 흡수 (안 제3조)

-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고 "동계올림픽추진과 스포츠사업관련사무"를 통합,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안 제3조의 1)
-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경제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의 한시기구를 둠.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가.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으로 2005년도 조직 및 인력운영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혁신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나. 조례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
- 국가적인 재해·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 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
-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구성되는 스포츠사업단과
- 한시기구로 6급팀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실과급 팀제운영이며
- 이에 따른 사무의 분장내용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일부 실과의 명칭 변경 부분 및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대한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유기구제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 여유기구제 도입으로 도내에서는 강원도가 『국제스포츠지원단』, 인제군이 『혁신기획단』, 철원군이 『자치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 또한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혁신분권업무』, 자치단체의 역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사무 등의 현안업무를 위한 조직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른 우리군 여유기구제 운영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사업단」의 경우 우리군의 염원인 2014 동계올림픽 유치추진과 스포츠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적절한 설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이라고 표현될 만큼 전력을 다하는 것에 비하여 이미 설치된 스포츠사업단의 조직구성과 인력배치를 살펴볼 때 동계올림픽 유치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닌 점과 2명의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대내외의 기대에 비추어 조금 우려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다음, 한시기구로 6급팀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실과급 팀제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발상이라는 견해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작용이 상존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의 경우 고참 6급 주사를 직위승진시켜 담당(5급)급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내부방침으로 상당기간 운영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 5급 정원이 500여명임을 감안할 때 10~20여명에 대한 직위승진을 활용한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를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우선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고 민선단체장이 행정을 이끌면서 시행된 그 동안의 인사운영 결과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많은 인사적체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이 논의도 되고 토론이 있어 온 것에 비하여 이렇다 할 대안이나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번 한시기구 설치로 6급 실과급 팀장 운영은 일정부분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한시기구의 팀장이 5급 승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역량 발휘를 최대화 할 경우의 순기능도 예상이 됩니다.
- 그리고 일부 부서(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도시과)의 과도한 업무집중을 해소하여 사무의 전문성, 집중화를 갖고 추진하는 점도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6급 팀장에 대한 업무의 안정성과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6급 팀장의 대 의회업무의 문제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업무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소신있는 업무추진보다 5급 승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을 위한 업무추진을 한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 과실이 있어 징계처벌을 받거나 다른 담당급으로의 전보발령시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6급 팀장의 6급 담당(과장)에 대한 리더십 발휘도 염려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6급 팀장의 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토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직위를 갖는 사업소장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이 강원도내 모든 자치단체의 현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의규칙, 조례개정 등이 필수적인 후속조치이나 현재까지는 관련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한시기구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심사시 조례개정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조직운영, 인사권에 대한 심사라는 것과 평창군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의 금번 인사에 대한 기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시기구 설치부분과 관련해서는 조례심사시 깊이 있는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무 분장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이번에 제출된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직원여론이 크게 도드라진 것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인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만은 팽배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유선통화 결과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내 자치단체의 실과급 팀제 현황과, 팀장의 직급현황, 회의규칙 개정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고자료】

조직개편 조례관련 검토자료

(2005. 2.28현재)

구 분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의회정원 조정	실과급 팀제 운영현황	팀장의 직급	의회에 6급팀장 참석현황
춘천시	없음	없음	없음	6급이 소장이나 부서장인 경우만
원주시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강릉시	없음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청산운영부장5급	불가능
동해시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태백시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속초시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삼척시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홍천군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횡성군	없음	전략산업육성팀	5급	불가능
영월군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정선군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철원군	없음	자치발전기획단 (운영예정)	5급	불가능
화천군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양구군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인제군	1명 증원	혁신기획단	5급	불가능
고성군	없음	없음	없음	불가능
양양군	없음	투자유치기획단 (운영예정)	5급	불가능